

『구미시 구미형 일자리 지원 및 촉진 조례안』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22년 11월 18일

나. 제출자 : 구미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22년 11월 18일

라. 상정일자 : 2022년 11월 28일

제263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

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경제지원국장 지영목

나. 제안이유

- 일자리 창출과 상생문화 확산을 목표로, 『국가균형발전 특별법』에 의거 추진되는 정부 상생형지역일자리 사업인 구미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체결한 『구미시 노·사·민·정 상생협약』 내 각종 이행 사업의 행정적·재정적 지원과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

다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 명시(안 제1조 ~ 제2조)

- 조례의 적용대상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 등(안 제3조~제4조)
- 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지원 및 촉진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(안 제5조~제7조)
- 상생형 일자리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8조~제17조)
- 상생기업에 대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18조)
- 상생협력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(안 제19조)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」 제11조의2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붙임)
- 합 의 : 기획예산담당관,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김 용 덕

- 본 「구미시 구미형 일자리 지원 및 촉진 조례안」 은,
 - 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」 제11조의2에 의거 구미형 일자리 사업의 추진과 노·사·민·정 상생협약의 주요 이행사항의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제정 조례안으로,
 - 구미형 일자리는 전국 6번째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으로, 조례안에는 일자리 창출 및 시행계획 수립과 촉진사업에 대한 지원과 협의체 구성, 상생협력기금 조성 운영에 대한 근거를 포함 하였으며 현재 구미국가산업단지 제5단지 내에 (주)LG BCM이 4,754억원 중 2,829억원을 발주('22.10월말 기준)하였으며, 일

1,000여명의 건설현장 인부가 출입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신산업 생태계를 마련하고 양질의 고용창출을 도모하여 지역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